

23

근로자 작업환경 개선

소관 : 산학협력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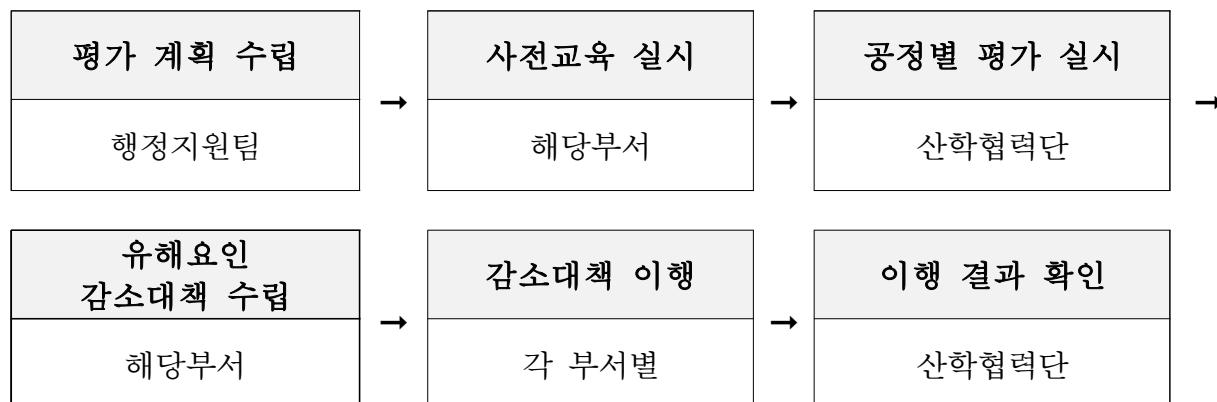
주무 : 행정지원팀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 공간내 유해,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
- 관련부서 :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등

2. 업무흐름도

■ 위험성평가/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



3. 주요내용

■ 위험성평가

- 산학협력단 유해·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, 시행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
 -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반기 1회, 수시평가는 건물, 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
- ※ 시행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)

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

-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(무리한 힘의 사용, 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)이 있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
 - 근골격계 질환은 요통, 근막통 증후군(근육통), 수근관 증후군(손가락 저림 등), 내상과염/외상과염(팔꿈치 통증) 등으로 정의됨
- ※ 시행근거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(유해요인조사)

■ 근로자 작업 현장 조사(작업환경측정)

- 위험성평가 또는 근로자 본인의 요구를 통해 유해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
- 연 2회 이내에서 전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점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구, 보호용품 등을 제공

■ 산업안전·보건기관 컨설팅

-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
- 연간 계획에 의거, 매월 컨설팅과 근무현장 점검, 안전·보건 교육을 위탁 운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
-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주에게 컨설팅 및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, 각 기관의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월 단위로 보고 실시
- 지정현황
 - 안전관리자 : 대한산업안전협회
 - 보건관리자 : 대한산업보건협회

※ 시행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관계 법령 개정 확인 및 관련 절차 준수

-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계 법령이 수시로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, 업무 처리시 관령 법령을 확인 후 업무 추진